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입법예고) 주요 내용

구분	조문	주요 내용
대표이사·가맹본부· 발주자 책임 강화	령12조 령70조 령56조	산재예방 의무 부과 - 대표이사(제조업 500인 이상, 건설업 시공능력 1,000위) - 가맹본부(가맹점수 200개소 이상) - 발주자(건설공사 50억 이상)
특수형태종사자 보호조치	시행규칙 99조	(직종) 특수형태종사자 범위를 9개 직종 한정(기존 산재법 규정 범위 동일)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조치) 직종별 안전·보건조치 규정 * 건설기계운전자 : 건설기계 사용시 전도·협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교육) 건설기계운전자 등 5개 직종
도급인 책임강화 및 위험작업 도급 제한	령51조	(책임장소) 사업장 외부의 도급인 책임장소를 22개소로 한정(현행 동일) -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대상) 사내도급승인 대상 한정 - 농도 1% 이상 황산, 불산, 질산, 염산 취급설비의 개조·철거 등 작업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해제 절차	시행규칙 71,72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제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심의위원회 개최·심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시행규칙 162, 165, 166조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 등 4개물질 및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미만의 R&D 물질 추가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업종	령10조②	전기업종 사업장 추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확대	령15조 별표3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 (공사금액별 선임대상 수, 방법 규정)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령19조 별표5	50인 이상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포함
건설공사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필요한 기계·기구	령67조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향타기 및 항발기로 규정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신설	령73조 별표15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보유자 4명 이상 등 안전수칙 미준수 벌금형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받은 경우 등에 대해 등록취소 사유 정함 설치·해체업을 등록하지 않고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절차 마련	시행규칙 110조 별표37	등록서류 및 처리 절차 등 신설 법위반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준 신설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지정	령85조 별표18	산화에틸렌 등 24종의 화학물질 추가 지정

* 세부 내용은 입법예고문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 종사하는 현업근로자 보호 강화(안 제2조 별표 1)

- 1)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 업종에 해당하나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현업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제
- 2)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 현업근로자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 또한 증가하고 있어 법의 일부 적용제외 규정이 현업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

나. 도급인·수급인 산업재해 통합공표 대상 업종 확대(안 제10조제2항)

- 1)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근로자 사망사고 등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현행 도급인·수급인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에 전기업종 추가 필요
- 2) 발전업을 포함한 ‘전기업종’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를 적용하여 원청의 하청업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 유도 필요

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대상(안 제12조)

- 1) 대표이사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정함
- 2) 안전보건개선계획에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안 제15조 별표 3)

- 1) 건설현장수 대비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 미

만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할 필요

2)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공사금액별로 선임대상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 등을 정함

마.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 확대(안 제19조 별표 5)

1) 현행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에 운수업 중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이 제외되어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피로, 화학물질 누출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해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에 추가할 필요

2)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을 포함하여 전문적인 보건관리를 통해 인명피해 및 업무상 질병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의 규정량 조정(안 제43조 별표 11)

1) '96년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대상물질 21종)된 이후 산업·기술의 변화와 '14년 대상물질 30종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대상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 필요

2) 총 51종의 대상물질의 유해·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인화성·독성·부식성, 기체(가스)·액체·고체)하고 유해·위험성을 비교하여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

사. 도급승인 대상작업(안 제51조)

1) 도급승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 중 도급 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으로 하고,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로 도급제한이 필요할 경우 법령의 개정 없이 도급승인 대상을 정할 수 있

는 제도 마련 필요

2) 유해화학 물질 중 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산, 질산, 염산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등에 대해 도급을 줄 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긴급한 사유로 도급을 제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아. 건설공사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안 제56조)

- 1)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신설에 따른 의무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대상 건설공사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대상 건설공사를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함

자.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안 제67조)

- 1) 건설공사 도급인이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을 건설현장에서 설치·해체·조립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기계로서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향타기 및 향받기”로 규정함

차.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안 제70조)

- 1)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을 외식업종(대분류), 도소매업(대분류) 중 편의점(중분류)으로서 소속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로 정함

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신설(안 제73조 별표15)

-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보유자 4명 이상으로 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으로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신설함
-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자에 대해 안전수칙 미준수로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 등록 취소 사유를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설치·해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함.

타.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지정(안 제85조 별표 18)

직업병이 발생하였거나 CMR(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 등 高유해성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산화에틸렌 등 24종의 화학물질을 허용기준 설정물질로 추가 지정

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 등 제외(안 제87조)

- 1) 타법을 통해 정보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학물질과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적용의 제외 필요
- 2) 일부 화학물질(건강기능식품 등)과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연간 제조·수입량 100kg 미만(개별용기 단위로는 10kg))을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절차 등 마련(안 제71조, 제72조)

- 1)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제 여부 결정하도록 규정
- 2)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고,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개선되고 작업중지 해제 이후 안전작업 대책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제 결정

나. 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안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 1) 도급승인, 연장승인 및 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급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
- 2) 도급승인 기준을 대상 작업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연장승인, 변경승인 및 승인 취소의 요건을 명확히 함

다. 건설공사발주자의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안 제88조)

- 1)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사항들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건설공사 단계별 발주자가 작성하거나 확인해야 할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는 내용 등을 정함

라. 기계·기구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안 제98조)

- 1) 건설공사 도급인이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 작업계획에 따른 이행 및 관련 자격 확인, 위험 예상시 작업중지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함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도입(안 제99조)

- 1)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대상 직종, 직종별 안전·보건조치 의무, 안전보건 교육 내용 등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2) 안전보건교육 대상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대리운전자, 퀵서비스 배달원, 골프장 캐디, 택배원,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해 2시간 이상의 채용 시 교육(특별교육 시 면제),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단기·간헐적 작업시 2시간 이상) 제도를 도입함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법의 보호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를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가맹본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방법 등(안 제100조, 제101조)

- 1)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가맹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방법,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할 필요

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절차 마련(안 제110조, 별표 37)

-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시 필요한 등록서류 및 처리절차 등을 신설함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의 법 위반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 승인(안 제162조, 제165조, 제166조)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비공개정보 승인, 대체정보의 제공요구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을 규정할 필요

2)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한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

자. 비공개 승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 마련(안 제 167조)

1) 비공개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2)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인은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일 이내에 다시 결정하여 통보

차. 국외제조자 선임요건 및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170조)

1) 수입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자를 국외제조자가 선임하는 경우 선임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카.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36)

1) 석면조사기관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이 공기 중 석면농도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

2) 공기 중 석면농도 허위 측정 및 측정 결과 거짓 작성 등을 방지하여 석

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석면노출 피해를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타.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 결과 보고 제도 도입(안 제220조)

1)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들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할 필요

2) 이에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근로금지 및 제한, 직업병 확진 의뢰 안 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 해당 노동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